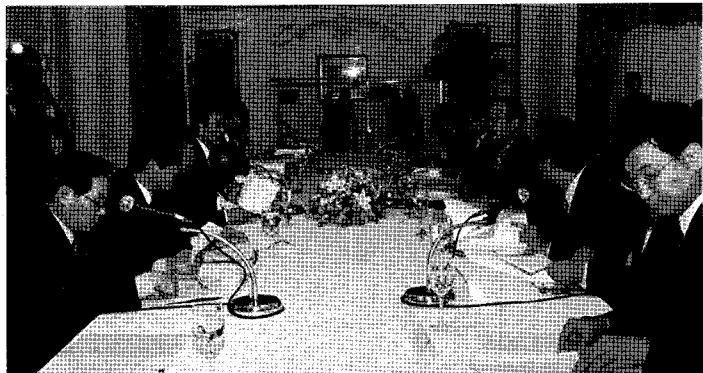


공정거래질서 자율준수위원회 출범

업계로 하여금 공정 거래법을 자율적으로 준수토록 유도하기 위한 공정거래질서 자율 준수위원회가 지난 3월 9일(금) 오전 11시 30분부터 롯데호텔 버클리 룸에서 공정거래질서 자율준수위원들이 전원 참석한 가운데 공식 출 범하였다.



한국 공정거래협회에 설치될 공정거래질서 자율준수위원회는 기업인 및 학계·연구기관과 법 조계, 그리고 시민단체와 사업자단체 등의 13명으로 구성되었으며, 앞으로 기업 스스로 공정거래규범을 지켜 나기는 문화정착을 위하여 「공정거래 행동규범」을 제정, 업계에 권고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공정거래질서 자율준수위원회 위원들은 공정거래질서 자율준수위원장에 박용성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을 민정일치로 선임하였으며 공정거래 행동규범 작성을 위한 7명의 실무위원회 위원들과 실무위원장도 선임하였다.

공정거래질서 자율준수위원회는 실무위원회가 6월말까지 작성하는 공정거래 행동규범(안)을 공청회를 거쳐 확정한 후 재계로 하여금 자율적으로 이를 도입토록 권고할 계획이다.

공정거래질서 자율준수위원회는 자율준수위원으로 이인호 롯데백화점 사장, 김재홍 한국담배 인삼공사 사장, 이인원 신한은행장, 이수창 삼성화재해상보험 대표이사, 강석진 GE코리아 사장, 박용성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손병두 전국경제인연합회 부회장, 이양순 한국공정거래협회 회장, 배광선 한국산업연구원장, 박길준 연세대학교 법대 학장, 김주원 법무법인 충정 변호사와 이재 후 김&장 변호사, 이남주 YMCA사무총장을 선임하였다.

또한 공정거래질서 실무위원회 위원으로는 곽주영 한국담배인삼공사 기획본부장, 홍성균 신 한은행 준법감시인, 김후석 삼성화재해상보험 준법감시인, 신현 롯데백화점 마케팅 부문장, 엄 기웅 대한상공회의소 상무, 김기현 YMCA 정책기획부장이 선임되었으며, 산업연구원의 심영섭 선임 연구위원이 실무위원장으로 선임되었다.

공정거래 행동규범이란?

공정거래법 자율준수 프로그램

공정거래 행동규범(Code of Conduct)이란 기업이 자율적으로 공정거래법 위반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운영하는 자체 내부통제시스템(control-inside program)을 말한다.

공정거래 행동규범의 핵심 7대요소는 ① 최고 경영자의 공정거래 행동규범의 준수의지 선언, ② 공정거래 행동규범의 집행을 전담할 자율준수 관리인의 운용, ③ 공정거래법 자율준수 편리의 작성, 배포 및 지속적 보완, ④ 임직원을 위한 체계적인 공정거래법 교육 프로그램 운영, ⑤ 위법행위의 조기발견을 위한 내부감사, 보고 시스템 구축, ⑥ 위법행위 책임자에 대한 인사 제재장치 마련, ⑦ 공정거래 행동규범과 관련된 모든 문서의 관리시스템 구축 등이다.

공정거래법 자율준수 프로그램(Compliance Program)이란 ① 공정거래법과 관련하여 형사상 또는 민사상의 어떤 책임이나 위반도 범하지

않기 위하여 회사의 공정거래법 준수에 관한 원칙의 천명 또는 선언, ② 이러한 정신에 따라 회사와 종업원 개개인의 위험을 최소로 하는 방법에 관한 지침을 포함해서 잠재적인 공정거래법 위반가능성과 이에 따른 위험관리에 대한 구체적인 공정거래법 준수지침을 담은 공정거래법 준수편람(매뉴얼)의 작성, ③ 준수편람의 내용에 관한 보다 실질적인 이해를 돋고, 특정행위의 적법성 여부를 판단하는데 도움을 주며, 준수 프로그램의 운영방법을 확실하게 이해시키기 위한 종업원들과 경영진의 교육, ④ 공정거래에 관한 최종 판단을 담당하는 지문부서의 설치와 공정거래법과 관련된 분쟁에 대비한 서류의 파기 또는 보존을 기록하는 기록보존 프로그램의 확립과 준수프로그램의 계속적 이행을 준비하는 것 등을 포괄하는 개념을 말한다.

자율준수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업들의 자율적인 공정거래법 자율준수 프로그램의 도입을 유도하고 자율준수 프로그램을 운용하는 기업에 대하여는 적극적으로 법 위반시 과징금의 감액이나 형사고발면제 등 제재수단을 완화해 주는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다.

미국, EU, 호주 등 선진국에서는 기업들이 법 위반을 사전방지하기 위해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을 운용하는 사례가 보편적이며 경쟁 당국도 기업의 CP운용을 적극적으로 지원 유도하고 있다.

선진국 공정거래질서 자율준수 프로그램 운영사례

■ 미국

독점금지법 위반행위가 범죄로 취급됨에 따라 대부분의 기업들이 법 위반 예방차원에서 CP를 적극적으로 운용하고 있으며 미 법무부도 양형가이드라인(Sentencing Guideline), 면책 제도(Leniency Program) 등을 통해 기업의 CP운용을 지원·유도하고 있다.

현재 GE, GM, IBM, Dupont, Allied Signal Inc., Chevron, The Dow Chemical, Pfizer, Hogan & Hartson, United Technologies 등 대부분의 대기업들과 다국적기업들이 독점금지법 CP를 운용하고 있다. 독점금지법 자율준수 프로그램이 갖추어야 할 기본 골격에는 미국 독점금지법 자율준수 프로그램에는 ① 독점금지법 자율준수 기준과 절차의 확립, ② 이러한 기준과 절차의 준수를 감독하기 위한 개개인의 임무, ③ 종업원들이 보복 위험 없이 위반행위를 보고할 수 있는 시스템, ④ 적정한 훈련 메카니즘에 의한 지속적 교육 실시, ⑤ 미래의 유사한 위반행위에 대응하는 적절한 절차 등이 포함되어 있다.

■ EU

경쟁당국의 독점법 집행강화에 대응하여 기업들이 법 위반 예방차원에서 기업내부의 자율준수 프로그램을 제정·운용하고 있으며 경쟁당국도 CP운영기업에 대해 제재수준을 경감해주는 등 기업의 CP운영을 지원·유도하고 있다.

CP는 일반적으로 당해 기업의 「독점법 준수 정책 선언」과 「독점법 가이드」로 구성되어 있으며 독점법 준수정책에는 기업내 CP 책임자 지정, 교육·훈련프로그램, CP 평가체계, CP를 위반한 종업원에 대한 징계절차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독점법 가이드는 담당 종업원이 준수해야 할 사항을 이해하기 쉬운 방법(예: Dos and Don'ts)으로 기재하고 있다.

■ 호주

경쟁소비자위원회(Australian Competition and Consumer Commission, ACCC)는 기업들의 경쟁법 준수를 제고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기업들의 경쟁법적 질문사항에 대한 응답 및 상담, 교육 프로그램 운용, 기업들의 자율준수 프로그램의 운용을 지원·유도하고 있다.

ACCC의 기업 자율준수 프로그램의 지원·유도정책으로 ACCC는 표준 자율준수 프로그램(Australian Standard)을 제정하여 기업들이 기준으로 활용하도록 보급(1998)하고 있는데, 표준 자율준수 프로그램에서 제시하는 주요 내용은 ① 이사회와 최고경영자를 포함한 전사 차원의 준수의지 선언, ② 프로그램 운용을 전담할 고위경영자를 지정하고 자원배분 및 권한 부여, ③ 회사내 경쟁법적 문제의 발견과 이를 처리할 절차의 제정, ④ 프로그램 운용과정에서 발생하는 불만사항을 처리하는 시스템 구축, ⑤ 프로그램 운용에 필요한 기록관리, ⑥ 내부감독·보고·검사시스템 구축, ⑦ 규제당국과의 긴밀하고 지속적인 연락 유지 등이다.

호주법원은 경쟁법 위반사건에 대한 재판시 점차 기업들의 CP 운용상황을 면밀히 평가하여 양형수준에 반영하려는 추세로, 호주법원은 기업들의 CP 운용상황에 대한 평가시 ① 실제 작동하고 있는 실질적인 CP(substantial CP)가 존재하는지 여부, ② CP운용이 성공인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고려하고 있다.